

제 839 호
81. 5. 2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경 수
편집: 문화공보관 김 진 호
전화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		
제 1097 호 :	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.....	3
◎ 고 시		
제 18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	6
제 184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.....	11
제 185 호 :	도시계획사업 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	11
제 186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) 신설지적승인.....	12
제 187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.....	12
제 188 호 :	도시계획시설 (계남국교진입로보장공사) 사업시행허가 ...	14
제 189 호 :	취락구조개선사업에위한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 취조성) 시행자명의변경승인.....	15
제 190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및지적승인.....	15
제 191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16
제 192 호 :	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바) 실시계획인가조서청정 ...	16
제 193 호 :	유료공원지정.....	17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1549

제 194 호 :	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.....	17
제 195 호 :	도시계획시설변경 (도로) 결정.....	18

◎ 공 고

제 139 호 :	주택개량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및변경인가를위한 공람공고	19
제 140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20
제 146 호 :	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	21
제 147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21
제 148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21
제 149 호 :	KS 표시정지처분공고	22

◎ 예 규

제 410 호 :	비상소집실시규정중개정규정	23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사 령

규 칙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시행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정 박 영 수 ㉔

1981년 5월 26일

○ 서울특별시규칙제 1097 호

서울특별시도시공원
조례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규칙은 서울특별시
도시공원조례(이하 "조례"라한다)
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공원시설의 설치) 조례제 2
조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
도시공원(이하 "공원"이라 한다)
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
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을 준수
하여야 한다.

1. 공원진입로, 등산로, 수로등
시민이용 시설을 변경차단하지
아니하여야 한다.
2. 수도관, 전주등 공익시설의 설
치를 용인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허가신청) ① 도시공원법

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6 조
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
공원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
하는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
한 허가신청서에 법시행규칙 제 11
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
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제 8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
하여 공익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
는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
허가신청서에 법시행규칙 제 12 조의
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
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
탁신청) ① 조례 제 3 조의 규정
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
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
지 제 4 호 서식의 신청서에 공원
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
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탁 및 허가를 받은자가
조례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
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
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
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
생략할 수 있다.

제 5 조 (관리위탁증등) ① 시장이
제 4 조 및 제 5 조의 신청에 의하
거 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
때에는 별지 제 5 호 제 6 호 및

제 7 호 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.

② 허가 및 위탁을 받은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권리의무의 양도 양수 신청 등) ①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 8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법시행령 제 17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
- 2. 신체상의 장애 발생 또는 사망.
- 3. 재력부족으로 인한 목적사업 수행 불능시

② 조례에 의한 권리의무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또는 점용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.

제 7 조 (기재사항 변경) 허가 및 위탁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

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 변경 또는 호적상 개명
- 2.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

제 8 조 (검사)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나 형질변경등 공원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다만, 타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장은 공원조성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제 9 조 (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등)

①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및 공원점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기간은 1년(허가기간)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 및 위탁기간이

<p>1년 미만인 때에는 월할로 계산한다.</p> <p>③ 운동 및 유희시설의 위탁료중 영업목적의 위탁료는 재산가액의 1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시 징수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전산한다. 다만, 수입총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산가액의 1/100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재산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④ 공원관리 공무원은 운동 및</p>	<p>유희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확인하고 입장권 또는 사용증표등을 사전 점인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0 조 (요금 징수방법의 예외)</p> <p>① 요금은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에 따른 요금 징정 지연등으로 인하여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요</th> <th>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 만 원</td> <td>미 만</td> </tr> <tr> <td>100 "</td> <td>" "</td> </tr> <tr> <td>200 "</td> <td>" "</td> </tr> <tr> <td>200 "</td> <td>이 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요	금	50 만 원	미 만	100 "	" "	200 "	" "	200 "	이 상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남 부 기 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 일 이 내</td> </tr> <tr> <td>20 일 "</td> </tr> <tr> <td>25 일 "</td> </tr> <tr> <td>30 일 "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남 부 기 간	15 일 이 내	20 일 "	25 일 "	30 일 "
요	금															
50 만 원	미 만															
100 "	" "															
200 "	" "															
200 "	이 상															
남 부 기 간																
15 일 이 내																
20 일 "																
25 일 "																
30 일 "																
<p>② 시장이 요금의 일부 (1/2 미만)을 말한다)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 1 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. 납부기간을 연기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</p>	<p>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1 조 (공원대장작성)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공원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제 12 조 (입장권) 유료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 9 호 서식과 같이 한다. 다만, 기념일등 필요에 따라 기념입장권등을 발행할 때에는</p>															

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칙)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원조례 시행규칙(규칙 제 1584 호, 1976.5.12)은 이를 폐지한다.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58 호(80.10.28)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점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오류동 192 의 19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천왕국민학교 대지 조성공사.

다. 사업시행규모

- ㄱ) 시행면적 : 15,229㎡ (4,407 평)
- ㄴ) 건축계획 : 건축면적 : 1,503㎡ (1층)
연면적 : 5,800.5㎡ (4층)

구조 : 철근콘크리트 라멘조

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-16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ㄱ)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허가후 2개월 이내

ㄴ) 준공예정일 : 착수일로부터 2년간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, 소재지, 지번, 지복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서(다음)

사. 토지 또는 건물,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(다음)

수용 또는 사용할토지, 전밭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		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
천왕 국민학교	구토구 오류동	192	답	4,271 중	종토구 창신동 98-5 이돈명 (가동기)
		191	"	2,592 중 2,238	영등포구 오류동 1동 마을금고 (근저당)
	190-2	잡	4,434 중 3,826	없 음	
	-5	"	460	"	
	-6	"	478	"	
	188-1	대	1,216	"	
	-7	"	30	"	
	-8	"	303	"	
	-4	"	365	"	
	-9	"	849	"	
	-5	도	413	"	
	-6	대	1,577 중 1,201	"	
	187-1	전	334 중 303	"	
	-3	"	193 중 150	"	
	189	"	2,751 중 2,140	"	

24-8

제 839 호 시

보 1981.5.26
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
	구로구	189-1	건	357㎡중 282㎡	없 음
	오류동	-2	"	432㎡중 402㎡	"
		188-3	"	99㎡중 97㎡	"
		-2	"	132㎡중 50㎡	"
		332-8	구	96㎡	"
	계			15,229㎡ (4,607평)	

수용되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

소재지	지 번	구 조	건 평	소 유 자		소유자이외 권 리 명 세	비 고
				주 소	성 명		
구로구 오류동	188-3	시멘트 블럭조	8.1 평	오류동 188-3	이기복	없 음	미등기
"	188-3	"	14.8 평	"	"	"	무허가
"	188-2	"	6.4 평	오류동 188-2	유상우	오류동 188-2 김봉준 (전세권설정)	기등기

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학교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	이해관계인	
					주소	성명	주소	성명
원왕 국민학교	구로구 오류동	192	잡	4,271 중 330	중구장충동 1 가 48-17	박세정	중로구장신 동 98-5 (기등기)	이은명
		191	"	2,592 중 2,238	영등포구오류동 68	이보인	오류1동 마을금고 (근저당)	
		190-2	잡	4,434 중 3,826	용산구청과동 2 가 29	김승록 외 1인	없음	
		-5	"	4,460				
		-6	"	478				
		188-1	대	1,216	영등포구오류동 163- 1 유성기업(주)			
		-7	"	30				
		-8	"	303				
		-4	"	365				
		-9	"	849				
		-5	도	413				
		-6	대	1,577 중 1,201				
		187-1	전	334 중 303		마포구염리동 118 김익외 1인		

학교명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자		이해관계인	
					주 소	성 명		
천왕 국민학교	구로구 오류동	187-3	전	183 ㎡ 중 150 ㎡	동대문구석판동 90-21간석보의인	이근철	없 음	
		189	·	2,751 ㎡ 중 2,140	영등포구오류동 154			
		189-1	·	357 ㎡ 중 282	"			
			-2	·	432 ㎡ 중 402	"	이기복	·
		188-3	·	99 ㎡ 중 97	영등포구오류동 188-3			
			-2	·	132 ㎡ 중 50	영등포구오류동 163-1 유성기업(주)		
	332-8	구	96	서울특별시				
	계			15,229 ㎡ (4,607)명				

또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소재지	지 번	구 조	전 평	소 유 자		소유자이외의 권 리 명 세	비 고
				주 소	성 명		
구로구 오류동	188-3	시멘트 블럭조	8.1 평	오류동 188-	이기복	없 음	미 등 기
"	188-3	"	14.8 평	"	"	"	무 허 가
"	188-2	"	6.4 평	오류동 188-2	유상우	오류동 188-2 김봉준 (전세권설정)	기 등 기

○서울특별시고시 제 184 호
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
 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 호(81.4.7)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(79.12.10) 규정에 의
 하여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 조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1.5.
 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사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신남사국민학교	사당동산 46 의 5 일대	9,151㎡	

* 위치 및 평면도: 별첨과 같음(생략)

○서울특별시고시 제 185 호
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 시행허가
 1. 서울시고시 제 122 호(81.4.13)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여객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(79.12.10) 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 조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
 인다.
 1981.5.23
 서울특별시장
 가. 사업시행지: 구로구가리봉동 535-4 의 12 필지
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여객자동차정류장) 실인운수(주) 내지조성공사
 다. 사업의 규모
 1) 사업시행면적: 7,280㎡
 2) 건축계획
 사무실: 지상 3층, 지하 1층
 정비공장: 지상 1층
 정비고: 지상 1층

<p>라. 사업시행자주소성명: 서울시서대문구북가좌동 3-33 신인운구(주)대표이사 석진부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년월일: 시행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</p> <p>준공예정일: 1982년 5월 30일</p> <p>단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의의 권리 명세: 별첨 (생략)</p> <p>사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 소성명: 별첨 (생략)</p> <p>아. 도면: 별첨 (생략)</p>	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86 호</p> <p>도시계획시설(학교) 신설지적승인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109 호 (81.4.7) 로 시설결정 고시된 성동구관내 중 곡동 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5.25 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국민학교	성동구중곡동 191-70 일대	8,562 평방미터 (2,590 평)	

나. 결정도면: 별첨 (생략)

<p>○ 서울특별시고시제 187 호</p> <p>도시계획사업(학교) 시행허가</p> <p>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28 호 (77.7.14) 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 계획시설(학교) 용지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,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 12.10)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학교)</p>	<p>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과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5 서울특별시장</p>
--	--

<p>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산 70-1 외 3 필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낙성중학교</p> <p>다. 사업규모 및 면적 : 26,626 평 (8,054.7 평)</p> <p>라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1-16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</p>	<p>마. 사업의 착수, 준공예정일 착수 : 시행 허가일로부터 30 일 이내 준공 : 착수일로부터 1년 이내</p> <p>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: 다음 사. 토지의 소유자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, 성명 : 다음 아. 시행 허가신청도서 : (생략)</p>
---	--
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

명 칭	소 재 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 세
낙성중학교	관악구봉천동	산 70-1	임 야	4,782 평중 4,713.7 평 (15,562 평)	없 음
		산 70-2	"	210 평 (694 평)	"
		산 70-5	"	700 평 (2,314 평)	"
		산 70-6	"	3,005 평중 2,431 평 (8,036 평)	"
		4 필지	"	8,054.7 평 (26,626 평)	"

토지소유자의토지수용법제 4 조 3 항의규정에의한판제인주소, 성명

명 칭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자주소, 성명	이 해 판 제 인
낙 성 중학교	관악구 봉천동	산 70-1	임 야	4,782 병중 4,713.7 평	서울특별시	없 음
		산 70-2	"	210 평	경북달성군성서면 본리동산 30 학교법인대구학원	"
		산 70-5	"	700 평	서울특별시	"
		산 70-6	"	3,005 평 중 2,431 평	"	서울특별시영등포 구여의도동 1-989 삼부아파트 10 동 163 호조용연 (지분등기인)
계		4 번 지		8,054.7 평		

○ 서울특별시고시 제 188 호

도시계획시설 (제남국교진입로
포장공사) 사업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362 호 (77.10.18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제남국교진입로포장공사) 을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0 호 (81.5.6-81.5.20) 로 서류공람 및 의견 정취에 이의가 없기에
2.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의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

시한다.

1981.5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의 시행지 : 서울특별시강서구 신정동 223 의 11 의 1 번지
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시설 (제남국교진입로포장공사) 사업
- 3) 사업의 규모 (면적) : 44 ㎡ (13평)
- 4) 사업의 시행자 : 강서구청
- 5)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81.5 - 81.6.1
- 6) 사용한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

소재지	지목	지적	소유권권리명세	성명	비고
신정동 223의 11	전	21 ㎡	강서구신정동 188-6	임정원	
신정동 222의 4	전	23 ㎡	구로구고척동 215	남정석	

7) 허가내용 : 별첨 허가도서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9 호

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) 시행자명의 변경 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0 호

(79.7.13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4 호 (79.9.29) 로 시행 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25조 동법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호 (79.12.10)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5.25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의 시행자 : 강서구신정동 765의 100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)

다. 사업의 규모 및 면적 : 66,055 ㎡

라. 변경사항

○ 당초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시

강서구신정동 781-14 장명환

○ 변경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시

강서구신정동 771-3 임윤기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:

○ 착 공 :

○ 준공 예정일 : 81.6.30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및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.10)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지적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1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 .

서울특별시 장

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중로	3	52	12 m	690 m	구기동	구기동	종점부분 187-2일대 위
변경	"	3	52	12 m	690 m	구기동	구기동	기원점, 연장=90미터

* 별첨 도면생략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191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 (78.4.3) 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10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25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의시행지 : 성동구자양동 화양추가지구 124 부력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(학교) 서울성동국민학교
3. 사업규모 : 간이급식소(건물 1 동 111.12 평방미터)
4. 사업시행지주소, 성명 : 성동구자

양동 화양추가지구 124 부력 학교법인 정철학원이사장 장선옥

5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
 - 가. 사업의착수년월일 : 1981.5.
 - 나. 준공예정년월일 : 1981.11.30
6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의 소재지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

◎서울특별시 고시 제 192 호

도시계획사업(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조서정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 호 (81.2.25) 로 도시계획사업(유통업무설비) 실시계획인가권 강동구 가락동 298-1 번지일대의 토지조서(수용할 토지의 목록과 소유자 및 관계인) 중 일부면적이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상 면적과 상이하여 도시계획법 제 26 조에 의거 이를 정정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건설사업소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도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
1981.5.26
서울특별시 강

○ 정정조서내용

구분	소재지	지목	지적(㎡)	소유자		관계인		소유권이유 권리명세
				주 소	성명	주 소	성명	
기점	서울시강동 구가락동 265번지	답	3,360 ㎡	서울시동 대문구계 기동 122- 14	김복남	서울시 강동구 마강동 473-11	장안명 농지개 량조합	잡류(조학의 해남) 서울시 시새해남
정정	"	"	3,660 ㎡	"	"	"	"	"

* 도면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93 호

유료공원지정

서울특별시 도로공원조례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창공원을 유료공원으로 지정하고 입장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5.25

서울특별시 강

다 음

- 공원명: 효 창 공 원
- 위 치: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

산 4 번지일대

- 면 적: 196,804 ㎡
(어린이공원과 숙명여자대학교
점용지를 제외한다)
- 개원일시: 1981.6.1 09:00
- 개원시간: 매일 09:00 ~ 18:00
- 입 장 료: 성인 100 원
소인 60 원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94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공교 제 120 호
(81.4.28)로 동량공고한바 있
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
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
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
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함.

2.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토목과에
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
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26

서울특별시

1. 사업시행의위치 : 동대문계기동 655
번지~계기동 289-6
1차년도 : 계기동 620-113~계기동
435
2차년도 : 계기동 655~계기동 289-6
2. 사업의종류와명칭 : 정화여상~오스
카극장간 도로포장공사
3. 사업규모 : 도로포장
B = 25 m L = 820 m
1차년도 도로포장
B = 15 m L = 219 m
2차년도
B = 25 m L = 601 m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(동대문구청장)
5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:
81.5.26 ~ 1982.12.31
6.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및 건물 :
별첨조서 생략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
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
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
토지조서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5 호

도시계획시설변경 (도로) 결정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
거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 331 의 2 의
17 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
(아파트 및 부대시설) 하고 동법
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
계획시설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

1981.5.27

서울특별시

1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
기정	소로	2	1	8	123	마장동 334-2	마장동 339-18
폐지	·	2	1	8	123	·	·
기정	·	3	2	6	110	마장동 406-2	마장동 333
폐지	·	3	2	6	110	·	·

구분	등 급	유 별	번 호	목 원	연 장	기 점	중 점
기 정	소 로	3	3	6	86	마장동 399-18	마장동 395
제 지	"	3	3	6	86	"	"
기 정	"	3	4	6	22	마장동 801	마장동 40A-2
제 지	"	3	4	6	22	"	"
위치변경	"	3	5	6	25	마장동 4-6-2	마장동 404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39 호

주택개발재개발사업실시계획
인가 및 변경인가를
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시고시제 22 호 (81.1.31) 및
동고시제 83 호 (81.2.23) 로 사업
계획 결정된 효창동 2 구역 및 목
정구역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설부고
시제 145 호 (74.5.13), 동고시제
18 호 (75.2.8), 서울시고시제 69
호 (77.3.15) 및 동고시제 91 호
(77.4.1) 로 실시계획인가된
승인구역외 6 개 구역의 실시계획인

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을
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 및
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
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건축국 재
개발 2 과 및 관할구청 주택과에
비치하고 재개발사업 구역안에 토
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
게 공람하며
3. 동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내용을
공람 하신후 귀하의 의견을 공람
기간내에 관할구청에 서면으로 제
출 할 수 있다.

1981. 5. .

서울특별시 장

공람공고내용

가. 시행자

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비 고
효창 2 차 2 구역	용산·효창동 3-149 번지일대	16,230	실시계획인가
목 정	중구 북정동 11	5,763	"

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승인	종로 송인동 58	57,901	실시계획변경인가 (기간연기)
육수제 6	성동 육수동 산 1, 2	78,397	"
금호제 1	성동 뚝방동 산 30 금호동 산 37	163,697	"
금호제 3	성동 남호동 산 2, 9	71,243	"
금호제 4	성동 금호동 산 15, 4	49,795	"
육수제 5	성동 육수동 산 6	37,488	"
돈암제 3	성북 돈암동 9, 11, 80 산 6	267,684	"

나. 시행자

금호 1, 3, 4, 육수 5, 6, 돈암 3,
승인, 효창 2 구역 : 서울특별시장
북정구역 : 제 1 지구, 북정아파트
재개발조합 (북정동 11-67)
제 2 지구, 충무아파트 건립조합
(북정동 11 번지)

다. 시행기간 : 인가 (변경) 일로부터
86.12.30

라. 설계도서 및 조서 :

인가구역 : 별첨 (생략)
변경인가구역 : 기 인가와 동일

나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
건물조서

인가구역 - 별첨 (생략)
변경구역 - 기 인가와 동일

바. 북정구역 재개발조합 사업시행

인가신청서, 규약 사업시행계획서:
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40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
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 처
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
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1. 5. . .

서울특별시장

허가번호 59
업체명 애경유지공업(주)
소재지 구로구구로동 501
대표자 장영신
규격번호 케이.에스.엔 2707
종류 및 등급 2종
중류 및 등급 정제글리세린
처분기간 81.5.19 부터 3개월
처분사유 KS 규격미달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46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205 호 (80.6.9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완료를 하였던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5.25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시행지 : 성동구 능동 20-26 의 6 필지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
3. 사업기간 : 80. 7.24 ~ 81. 5.
4. 사업규모 : 시장용지면적 800.8 평
건물규모 : 건물 2 동 (지하 2 층, 지상 3 층)
연면적 1,834 평
5. 허가번호 및 일시 : 서울특별시고시 제 205 호 (80.6.9)
6. 도시계획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용산구이촌동 301-152
광전산업주식회사대표 김용재
7. 준공도면 : 별첨 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47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1. 5. .

서울특별시장

-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허가번호 | 1945 |
| 2. 허가일자 | 80. 1.21 |
| 3. 제조업체명 | 국일금속공업사 |
| 4. 대표자 | 권태산 |
| 5. 소재지 | 강서구신정 1 동 598 |
| 6. 품 목 | 수도꼭지 (가로꼭지) |
| 7. 규격번호 | KSB2331 |
| 8. 처분기간 | 공고일로부터 3 개월 |
| 9. 처분사유 | KS 규격미달 (d, 나사부) |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48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

24-22 제 839 호 시

보 1981. 5.26

<p>의거 다음과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81. 5. 서울특별시장</p> <p>1. 허가번호 1986 2. 처가일자 80. 8. 2 3. 제조업체명 영남금속공업사 4. 대표자 권태정 5. 소재지 영동포구문래동 5가 19-13 6. 품 목 수도꼭지 (새로꼭지) 7. 규격번호 KSB2331</p>	<p>8.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9. 처분사유 KS규격미달 (품통두께 0.7% 미달, 걸모양 불량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49 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KS 표시정지처분공고</p> <p>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KS (한국공업규격) 표시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 5.25 서울특별시장</p>
---	--

<p>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규격번호 품명 종류등급 처분기간 처분일자 처분사유</p>	<p>제 614 호 72. 2. 1 한국전선공업(주) 박 석 모 서울도봉구도봉동 62-3 KSC3302 600 V. 과닐전선 단선 2.0 mm 처분일로부터 3개월 81. 5.25 KS 규격미달</p>	<p>제 1267 호 76. 2. 9 한국전선공업(주) 박 석 모 과 동 KSC3304 기구용. 비닐코오드 평형 0.75 mm X 2C 과 동 81. 5.25 과 동</p>
--	---	--

예 규

○ 서울특별시예규제 410 호

비상소집실시규정중개정규정

비상소집실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3 조 (소집훈련) 제 1 호중 "4" 를 "2" 로 하며 후단의 "이상" 다음에 "(반기1회이상)" 을 첨가 하고 제 2 호중 "월 1" 을 "년 4" 로 하며 후단의 "이상" 다음에 "(분기1회이상)" 을 첨가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 령

◎ 1981.5.11

발령 187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석	직 급
심 화 식	환 경 1 과 지방화공기사보	환 경 1 과	지방화공기사보시보
김 병 위	환 경 2 과	환 경 2 과	.
최 중 갑	.	.	.
딘 봉 문	도 시 가 스 과	도 시 가 스 과	.
함 점 섭	도 시 가 스 사 업 소	도 시 가 스 사 업 소	.
서 혜 숙	종 합 종 말 처 리 사 업 소	종 합 종 말 처 리 사 업 소	.
이 중 수	죽 도 수 원 지 사 누 소	죽 도 수 원 지 사 누 소	.
박 노 윤	비 상 제 회 보 직 관 실 지방건축기원보	비 상 제 회 보 직 관	지방건축기원보시보
이 대 원	동 대 문 구 보 건 소 지방보건기사보	동 대 문 구 보 건 소	지방보건기사보시보
	(X선)		(O선)

◎ 1981.4.16 발령 188 호

성 동 구 윤 용 백
지방보건기원보

연천군 전출을 명함.
서울특별시장

◎ 1981.5.15 발령 190 호

새 마을 사 업 과 김 숙 원
지방행정주사

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전출을명함.

<p>업 무 과 구 자 록 지방행정주사</p> <p>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전출 을 명함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<p>◎ 1981.6.1. 발령 196호</p> <p>강릉시 김종순 지방행정서기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중구 근무를 명함.</p>
<p>◎ 1981.5.25 발령 193호</p> <p> 박철호</p> <p>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 방역과장 28호농 기좌시보</p> <p> 발령 195호</p> <p> 강 남 구 박 용 하 지방축산기사</p> <p>농축과 축산계장 직무대리 서울특별시장</p>	<p>발령 197호</p> <p>남양주군이길현 지방간호기사보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강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